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최근 경쟁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본협회는 10월 12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최근 경쟁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찬회에서 이남기 부위원장은 21세기 경제환경변화의 흐름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남기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 중에서 특히 지식·정보화의 가속화와 승자독점화의 확산을 강조하였다. 지식·정보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경제주체들은 생존·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체·쇠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정보·지식 등 무형자산에 의해 국부가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중이며 개방화의 진전과 정보통신혁명으로 사회의 디지털(digital)화·스피드(speed)화가 촉진되어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승자독점화가 된다는 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싹쓸이하거나 독식하는 사회”로 변하고 승자독점시장에서는 경쟁에서 받는 보상이 절대적인 능력발휘에 의해서보다는 이에 더하여 상대적인 능력발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1등과 2등이 능력면에서는 별차이가 없더라도 1등은 모든 것을 갖게 되나 2등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경제환경에서는 각 기업단위로 경쟁부문에서 세계 1위가 아니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공정경쟁정책도 환경변화에 따라 개혁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 대기업 그룹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비관련 부문의 다각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상호지급보증, 내부거래 등과 같은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개선하여 개별기업 단위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체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남기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업경영의 체질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회소식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98년 2월 폐지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및 보험회사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총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사업에의 출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당내부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부당지원행위는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기업 지원에 분산함으로써 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을 초래케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수차례의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1~10대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상장·비상장 불문)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대상으로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가 낮아 부당지원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과징금 부과 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2%에서 5%범위 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하겠다고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특이

질문 : 공정거래제도는 거의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장려 또는 유인책을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이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답 : 행정영역은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조장행정은 각 행정부서에서 수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은 그 기능상 주로 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업무의 경중에 따라 선별하여 자율화 쪽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질문 : 대기업집단에서는 지주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개편 등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채비율 200% 이내 감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별하고 이에 상응하는 융통성을 가감하여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답 : 현행법은 순수지주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구·검토하여 보겠다.

협회소식

'99년 10월중 공정거래위원회 위탁 소비자단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10월 21일(목),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12개 소비자단체 임직원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신영선 서기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제도, 표시·광고법 관련 주요제도 내용, 약관 규제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99년도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 계획

본 협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박3일간 충청남도 도고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본 협회의 회원사 및 비회원사 간부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99년도 공정거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세미나는 공정거래위탁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간에 의견교환 및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발 표 주 제	발 표 자
- 제1주제 : 공정거래제도의 운용방향	총괄정책과장
- 제2주제 : 경제력집중의 억제 및 기업결합 제한제도	기업결합과장
- 제3주제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경쟁촉진과장
- 제4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	하도급기획과장
- 특별강연 :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영실적 평가 및 개선방향	이규억 이주대교수
- 특별강의 : 표시·광고법 해설	신영선 서기관
- 건강강의 : 현대인의 건강	신성구 원장

본 협회의 공정거래교육 및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기획부(☎ (02)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소식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화)에 제1차 조정회의를 개최한 이후 10월 14일까지 접수된 28건(1차 조정성립 3건 제외)의 분쟁 사안에 대해 10월 15일(금), 신무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분쟁사안과 그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정성립(10건)

- (주)대교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4,748천원 및 지연이자 234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주)오브제컴퍼니의 부당반품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동사의 상설매장에서 1개월간 반품제품의 판매(재고소진)를 하고 판매대금 1,245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남호종합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13,000천원 및 부가세 1,800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주)인스필의 부당감액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부당감액금 16,574천원과 미지급대금 8,689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해동종합건설(주)의 선금금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미지급대금 25,945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삼부토건(주)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정산합의금 74,800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대한(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신고인이 정산과정에서 누락시킨 현장가불금과 공제금을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에 계상하고 차액 31,000원은 받지 않기로 하고 조정수락
- 대정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조정안대로 정산합의금 29,700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협회소식

- 대지종합건설(주)에 대한 분쟁 건(2건)
 - 조정안대로 각각 미지급대금 29,700천원과 24,750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조정불개시(8건)

[피신고인 요건 결여]

- 건설업(원사업자 매출액 및 시공능력평가액 30억이상 미해당)
 - 금정종합건설(주)에 대한 분쟁 건
 - 정라종합건설(주)에 대한 분쟁 건
 - 태광종합건설(주)에 대한 분쟁 건
- 제조업(원사업자 매출액 20억이상 미해당)
 - 삼양엔지니어링(주)에 대한 분쟁 건
 - 삼양A-FOCUS(주)에 대한 분쟁 건(2건)

[신고인 요건 결여]

- 은성기초건설(주)에 대한 분쟁 건(신고인 무면허 사업자)

[조정대상 미해당]

- 삼익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삼익건설(주)는 부도로 인하여 법원의 화의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아 이 건 공사비 정산문제는 화의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 준용)

<분쟁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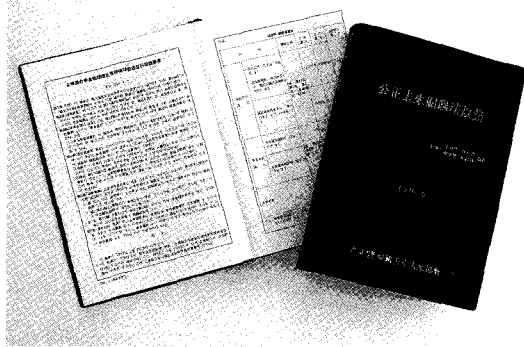
1999년 10월 18일 현재

구 분	접수현황			조 정		조정불개시			처리중	
	계	제조	건설	성립	불성립	요건미달	조정대상 미해당	조사불응	합의	진행
조정의회	14	2	12	10	-	1	-	-	-	3
직접접수	18	7	11	3	-	6	1	-	1	7
계	32	9	23	13	-	7	1	-	1	10

'99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각종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약관법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되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과징금부과세부기준에관한고시와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되어진 방문판매법과 할부판매법, 그리고 올 2월 5일에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하였다.

동 공정거래법규집의 가격은 2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 2) 기업결합의신고요령
 - 3) 기업결합심사기준
 - 4) 자회사의의범위에관한심사요령
 - 5) 자회사의의설립전환의신고및자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 6)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 기준
 - 7) 공동행위및 경쟁제한행위의인기신청요령
 - 8)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 9)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10)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1) 공동구매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2)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관한지침
 - 13)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 14) 대규모기업집단의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
 - 15)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협회소식

- 16)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 17)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8)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시간절차등에관한규칙
- 19)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의한이예관
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2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23)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24)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외고발에
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 25) 공정거래위원회소송시간수임변호사보수규정

II.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규정약관안법을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 2)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3) 선급금등지연이자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
 - 4) 간접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5) 하도급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 6) 하도급거래규정화지침
 - 7) 과징금부과기준

III.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IV.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2) 주택광고에관한심사기준
 - 3)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4) 상가등의분양및임대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5)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6)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7)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8)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9)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10) 주요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V.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VIII.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

1. 공정거래위원회의조직
2. 공정거래위원회의조직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의위원전결규정
4.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2022년 9월 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02)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